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청장 등 연령정년 적용 배제근거 마련〉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58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정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06.

다. 회 부 일 : 2025. 11. 0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및 정년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1명(만나이), 14명(연나이)에 달하는 등, 현재 임기 및 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

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치안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정년) ① ~ ⑥ (생략) <신설>	제30조(정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¹⁾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따라

1)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重任)할 수 없다.

제16조의2(국가수사본부장)

-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임기 중이라 하여도 퇴직하여야 함.

경찰청장 등에 대한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치안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03년 12월에 신설되었으며,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제는 2021년 1월 경찰 수사권 독립 과정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연령정년 배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아니하여,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임기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 까지였으나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2018년 6월에 퇴직한 바 있으며,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후보군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임기 중 정년 도달로 인한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 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치안행정에 관한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임기제 기관장에 대한 연령정년 적용 배제 문제는 임기제 도입 취지의 실현,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정년제도의 근본 취지, 다른 공직과의 형평성, 조직 내 인사 운영의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경찰청장과 유사한 직위의 정년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청장과 임기 및 중임제한이 동일한 검찰총장²⁾의 경우, 「검찰청법」 제41조는 검찰총장 외 검사의 정년을 63세로 정하되 검찰총장의 정년³⁾을 65세로 정하여 검찰총장이 임기(2년)중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장과 유사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소방청장의 경우 연령정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방공무원법」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0세에 도달하면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장의 직무 특성 및 소방청장 등 타 기관장과의 제도적 통일성 내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의 경우 합동참모의장의 연령정년을 63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합동참모의장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 「검찰청법」 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소방공무원법」 제25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하고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임기(2년)를 보장하고 있음.⁵⁾

[유사 특정직공무원 기관장의 연령정년 및 임기 비교]

법원			검찰			군인		
구분	연령	임기	구분	연령	임기	구분	연령	임기
대법 원장	70세	6년 (중임×)	검찰 총장	65세	2년 (중임×)	대장	63세	합참의장:2년 (연령정년 미적용)
대법관	70세	6년 (연임○)	검사	63세	-	중장	61세	
판사	65세	10년 (연임○)				소장	59세	
						준장	58세	

반면, 정년제도는 공직 사회의 세대교체와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하위 계급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최고위직에 대한 정년 배제가 조직 내 인사적체를 심화시키거나 하위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는 공무원 정년제도의 취지, 타 기관과의 형평성, 임명권자

5)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정년

대장: 63세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인사권과의 관계, 특정인을 위한 입법 논란 가능성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된 바 있음.⁶⁾

부처 의견으로, 경찰청은 ① 임기제 취지(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업무의 독립성 보장) 실현, ② 일관된 정책 추진 및 중도 퇴직 시 치안공백 우려 해소 등 조직 안정, ③ 임기 중 연령정년이 도래하는 치안정감·치안감을 후보군에 포함하여 대상자 임명의 폭 확대 및 일반공채 출신의 승진 기회 확대, ④ 군·검찰 등 다른 특정직들이 기관장급 주요직위에 대하여 별도의 연령정년을 규정하여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경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여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해양치안 공백과 조직운영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대응하는 해양경찰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4

6)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689호, 제382회 국회 정기회, 2020.11.1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시 논의 과정에서 ① 임기제 기관장 정년 배제 필요성, ② 공무원 정년제도의 근본 취지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③ 임명권자의 인사권과 임기제 충돌 문제, ④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 논란 가능성, ⑤ 정년 연장 등 대체 방안 검토 필요성이 언급됨.